

「특허료 등의 징수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

2024. 9.

특 허 청
(산업재산정보정책과)

법 제 처 심사 前

1. 개정이유

한시적 감면규정의 기한 연장 여부 반영,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특허고객에 대한 감면 규정 개선 및 수수료 감면을 통한 기술거래활성화 등을 위하여 「특허료 등의 징수규칙」을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수수료 감면제도 정비

- 특별재난 선포 시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현행 모든 경제주체에서 실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소상공인으로 제한
- 재난 등 발생시 수수료 등의 감면에 관한 특례(징수규칙 제13조)에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' 삭제

나.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이전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

-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적극적 활동을 위해 ①이전등록료·신탁(변경)등록료* 면제 및 ②특허연차등록료 감경비율을 50% → 70% 조정

다. 지식재산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

- 개인 및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촉진 등을 위하여,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기간을 민법 제162조에 근거,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

라. 특허료(등록료) 및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기간 연장

- 사업개시 후 3년 내의 중소기업(스타트업)의 우선심사신청료(연간10건) 감경기간을 3년 연장 ('24년 → '27년)
- 신청건수가 미미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 및 개인 등에 대한 우선심사신청료(연간 2건) 감경은 기간연장 종료
- 은행이 신탁권 설정으로 개인, 중소기업 등의 특허권·디자인권을 이전받을 때 감경되는 특허료(등록료) 감경은 기간연장 종료

마. WIPO 국제사무국 이관서류 처리에 따른 수수료 규정 명확화

- 특허청으로 잘못 접수된 국제출원 서류는 접수 후 기본사항의 검토 등 일반적인 출원에 준하는 기본절차를 거친 후 국제사무국으로 이송
- 이 경우 국제사무국으로 이송하는데 발생하는 송달료(45,000원)를 특허협력조약 규칙에 근거하여 출원인에게 부과

마. 특허청 비상출원서비스 사용에 따른 국제 출원료 감경

- 특허청 ePCT 비상출원서비스를 사용한 출원인에게 전자 출원한 경우와 동일한 출원료(300스위스프랑) 감경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협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OOOO. OO. OO. ~ OO. OO.) 결과, OOOO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OOOO

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

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제3항 중 “5년”을 “10년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제1호 중 “송달료”를 “송달료(「특허협력조약 규칙」 19.4(b)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특허청 비상출원서비스를 이용하여 출원하는 자에 대하여 300 스위스프랑에 상당하는 금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”를 “제60조”로, “주된 사무소를”을 “사업장을”로, “자 중”을 “개인 및 소상공인 중”으로 한다.

[별표 4]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특허료, 등록료 및 수수료의 면제(제7조제1항제1호 관련)

면제대상	면제대상 특허료, 등록료 및 수수료
13. (신설)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의2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	이전등록료, 신탁 또는 변경 등록료

별표 4 비고 본문 중 “제12호”를 “제13호”로 한다.

[별표 5]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특허료,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경(제7조제1항제2호 관련)

감경 대상	감경률		
	출원료, 심사청구료, 최초 3년분의 특허료·등록료	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4년차 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·등록료	권리범위확인심 판의 청구료
6.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 한 법률」 제35조 의2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	-	100분의 70	-

[별표 6]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특허료, 등록료 및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(제7조제1항제3호 관련)

감경대상		감경율	감경기간
2. 우선심사 신청료 (연간 10건)	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 내에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한 중소기업	100분의 70	2027년 12월 31일 까지 특허 출원의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

[별표 7]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재난 발생 시 특허료,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(제13조제2항 관련)

감면대상	감면율	
	출원료, 심사청구료, 최초 3년분의	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4

		특허료 · 등록료	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 · 등록료
1. 개인	가.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	100분의 90	100분의 70
	나. 65세 이상인 사람		
	다. 가목 및 나목의 사람을 제외한 개인	100분의 80	
2. 소상공인	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	100분의 80	

별표 7 비고 제2호 중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6조에 따른 재난 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(선포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 한정한다)”를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의 피해자(신청인)와 출원인 · 권리자가 동일한 자”로 하고, 같은 비고 제5호를 삭제하며, 같은 비고 제6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호(종전의 제6호) 중 “제6호까지, 제8호 또는 제10호”를 “제2호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) 개정안 시행 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개인 및 소상공인에 대해 적용한다.

제3조(기술신탁관리기관의 이전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) 개정안 시행 후 신탁·변경되는 특허 건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지식재산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) 개정안 시행일 당시 소멸되지 않은 포인트부터 적용한다.

제5조(특허료(등록료) 및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) 개정안 시행 후 특허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6조(지식재산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) 개정안 시행일 당시 소멸되지 않은 포인트부터 적용한다.

제7조(WIPO 국제사무국 이관서류 처리에 따른 수수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) 개정안 시행 후 최초로 수리관청으로써의 국제사무국에 대한 이송대상 출원부터 적용한다.

제8조(ePCT 비상출원서비스 사용에 따른 국제 출원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) 개정안 시행 후 최초로 특허청 비상출원서비스로 PCT 출원서를 제출한 건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의2(지식재산포인트의 부여 · 사용 및 환수) ① (생략)	제7조의2(지식재산포인트의 부여 · 사용 및 환수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삭제	
③ 지식재산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지식재산포인트를 받은 날부터 <u>5년</u> 이내에 특허료, 등록료 및 수수료(국제출원수수료의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송달료 및 조사료만 해당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식재산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.	③ ----- ----- ----- <u>10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10조(「특허협력조약」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) ① 「특허협력조약」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10조(「특허협력조약」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) ①----- ----- -----.
1. <u>송달료</u> : 매건 4만5천원	1. <u>송달료</u> (「특허협력조약 규칙」 19.4(b)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한다) ---
2. ~ 11. (생략)	2. ~ 11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국제출원료의 감면은 다음 각	③-----

호의 규정에 따른다. 1. 삭 제 2. (생 략) <u><신 설></u> ④ ~ ⑨ (생 략) 제13조(재난 등 발생시 수수료 등 의 감면에 관한 특례) ① 특허 청장은 「특허법」 제83조제2 항제2호 및 「디자인보호법」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「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6조 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 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특허 료,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 ② (생 략)	-----. 2. (현행과 같음) 3. 특허청 비상출원서비스를 이 용하여 출원하는 자에 대하여 300 스위스프랑에 상당하는 금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. ④ ~ ⑨ (현행과 같음) 제13조(재난 등 발생시 수수료 등 의 감면에 관한 특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제60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사업장을 ----- 개인 및 소상공인 중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-